

충청북도공립초등학교교과전담교사자격취득을 위한보수교육과정수강료징수조례안 검토보고

1999. 5. 17
교육사회위원회

1. 제 안 자 : 충청북도교육감 제출

2. 제안및회부일자

- 제 안 : 1999년 4월 29일 제출
- 회 부 : 1999년 4월 29일

3. 제안이유

- 「교원자격의취득을위한보수교육에관한규칙」 제8조에 의거 99공립 초등학교 교과전담교사 시험에 선발된 자의 교과전담교사의 자격취득을 위한 보수교육과정 수강료를 정하고자 함

4. 주요골자

- 보수교육대상자 수강료 (안 제2조)
80명미만 1,071,000원, 120명미만 954,000원, 160명미만 887,000원
200명미만 854,000원, 240명미만 826,000원, 280명미만 811,000원
320명미만 796,000원, 320명이상 787,000원
- 수강료는 당해 개강일 5일전까지 납부 (안 제3조)
- 과오납 및 개강하기전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강료 미반환 (안 제4조 제1호 및 제2호)
- 수강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강허가 취소 (안 제5조)

5. 검토의견

- 「교원자격의 취득을위한 보수교육에관한규칙」 (교육부령) 제8조 제2항에 “수강료는 교육에 필요한 실비의 범위안에서 정하여야 한다”라고 규정되어 있는데, 본 조례안의 수강료는 초등교사신규 임용공동관리위원회에서 기준으로 산출한 표준연수경비 자료를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